

주민기본대장 사무에 있어서의 지원조치 신고서

시구청촌		접수	연락
		/	/
전송	/	/	/
	/	/	/
	/	/	/

○○○○○○장  
관계시구청촌장

님  
주민기본대장 사무에 있어서 가정폭력 및 스토크 행위 등의 피해자보호 지원조치의 실시를 요청합니다.

平成 年(년) 月(월) 日(일)

성명 비고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年(년)月(월)日(일) )	주소	연락처	본인확인		
가해자 (판명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 年(년)月(월)日(일) )	주소	기타			
신청자의 상황 (어느 쪽인가 V)	배우자 폭력방지법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피해자이며, 또한 거듭되는 폭력에 의해 생명 또는 신체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그 주소를 탐색할 목적으로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요청을 행할 우려가 있다.		스토크 규제법 제 7 조에 규정하는 스토크 행위 등의 피해자이며, 또한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그 주소를 탐색할 목적으로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요청을 행할 우려가 있다.			
첨부서류 (해당서류에 V)	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기타			
상담처	(경찰서나 배우자 폭력 상담지원센터 등에 상담한 경우, 상담한 일시, 경찰서 등의 명칭, 담당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입하십시오) 年(년) 月(월) 日(일) (상담처의 명칭) (담당과)					
지원조치를 요청하는 것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희망에 V	지원을 요청하는 사무		현주소 등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현주소	위와 같음	
		주민표 사본 등의 교부 (현주소지)		현주소	위와 같음	
		주민표 사본 등의 교부 (전주소지)		전주소		
		호적의 부표 복사의 교부 (본적지)		본적		
	호적의 부표 복사의 교부 (전본적지)		전본적			
아울러 지원을 요청하는 자 (동일 주소를 가지는 자에 한함)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 등의 의견	1 상기 신청자의 상황이 틀림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2 상기와 아울러 지원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3 1, 2 이외의 경우에 경찰 등에서 특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 (※일시보호의 유무, 상담시기 등) 이 있는 경우 { 파악하고 있는 상황 :			년월일 담당 시구청촌의 확인		
	平成 年(년) 月(월) 日(일) 장 (인) (담당 과 계)					
비고						

- (주) ●굵은 선 안에 기입하십시오.  
 ●신고할 때 본인의 확인을 합니다.  
 ●신고의 내용에 있어서 경찰서 등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조치의 실시 후에는 본인의 주민표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조치는 엄격한 심사의 결과,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의 연락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되기까지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해당신청이 없는 경우 기한이 되면 지원을 종료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했던 시정촌장에 신청을 하십시오.